

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  
2006.9.4~9.15(12일간)

# 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 
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**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 
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 
심사보고서**

2006. 9. 15.

기획행정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년 8월 28일  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6년 8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5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기획행정위원회(2006.9.5)
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곽연창)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

상으로 함(안 제2조)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-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,
-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우리도에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, 2005년말 현재 19세이상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때 11,260명정도가 되며, 개정전 25,000명에 비해서는 1/2정도가 되겠습니다.
  - ※ 개정전(대통령령) 20세이상 주민수가 110만이상 150만미만일때 연서주민수 25,000명
  - ※ 개정후(조례) 19세이상 주민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 1,126,309명('05.12말 19세이상 인구수)×0.01 = 11,263명 정도
-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,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남발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1999년 8월 31일 도입된 이래 우리도에서는 2005년 「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」 1건이 있었음을

사례로 볼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#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8월 28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06.1.11.)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(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)

## 2. 주요내용

-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

### ※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

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## 조례 제 19 호

###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연서 주민수)**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의3(조례의 제정 및 개·폐 청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, 「주민등록법」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0조의2 (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